

「새만금 수상태양광 1.4GW 투자유치형 발전사업」 투자설명회(2019.12.11.) 주요 질의사항

연번	질의내용	답변사항	비고
1	○ 접수 마감일자의 작업일자가 부족하여 연장이 가능한지?	○ 제안서의 분량을 최소화 하였음. 제3자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감일자까지는 접수가 필요한 실정임	
2	○ 지침서 제16조의 신규사업의 범위는?	○ 기 입주기업과 유사기업, 협약체결 기업, 입주한 기업 등은 참여는 선호하지 않음	
3	○ 개발사업의 소유권은?	○ 새특법에 따라 사업자의 몫이 됨. 다만, 정산 제도에 따라 정산은 필요할 것임	
4	○ 제안자의 제안사항에 대한 이행 범위는?	○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행가능성이 제시되어야 함. 이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적합한 제안서를 채택할 예정임	
5	○ 제안서 채택자의 혜택은?	○ 사업모델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, 제3자 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에 유리하다고 판단됨	
6	○ 계통연계는 어떤 기관이 주도하는가?	○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총괄 추진 중임	
7	○ 계통연계비용 정산은 어떻게 하나?	○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개발공사가 함께 정산하고 새만금개발청이 지원할 예정임	

연번	질 의 내 용	답 변 사 항	비고
8	○ 발전사업권은 제안서 채택자 또는 제3자 공모로 선정된 자 중 어떤 자에게 부여되는가?	○ 발전사업권은 제3자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자에게 부여된다.	
9	○ 제3자 공모시 채택된 제안서 보다 더 우수한 제안이 가능한가?	○ 가능함	
10	○ 제안서의 복수 채택이 가능한가?	○ 우수한 제안서는 다수라도 채택할 예정임	
11	○ 발전사업의 인허가는 어떻게 진행되나?	○ 한국수력원자력이 총괄 인허가를 득하고 있는 중으로, 전기사업허가 등은 이후 사업자가 선정 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양도할 계획임	
12	○ 주민참여수익 7%, 매립면허권 3% 등 발전사업에 따른 부담이 많고, REC 수익도 떨어지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 부담이 있다.	○ 주민참여는 수익 공유를 위해 모든 사업에 공통적인 사항이라 번복할 수 없으며, 나머지 부담 금액은 사업성 검토를 통해 제안자가 감안해야 할 사항임	
13	○ 주민참여율 10%의 수익은 언제부터 지급을 하여야 하며, 주민참여율이 미달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?	○ 발전사업 공사 완료 후 발전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고, 참여율이 미달될 경우에는 자체 재원이나, PF를 통해 충족하면 됨	
14	○ 투자범위, 투자위치 등이 중복되어 제안서를 각각 제출할 경우 어떻게 처리 되나?	○ 원칙적으로, 먼저 제출된 제안서가 우선권을 갖고, 우선 심의할 예정이며, 불분명한 사항은 심의를 통해 조정 및 처리할 예정이다.	